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병무청장의 진료기록 요청
법적근거 마련〉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025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4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9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2. 27.
- (3) 회 부 일 : 2024. 12. 3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 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로 인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관련 기관에 진료기록 및 치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70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진료기록을 확인 (열람·사본발급 등)할 수 있게 하는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의료 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10호).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② (생략)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 ----- -----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	10. --제11조의2 및 제77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와 ----- ----- -----

<u>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 우</u> 11. ~ 19. (생 략) ④·⑤ (생 략)	<u>병역판정검사대상자, 확인신체 검사대상자의 ----- -----</u> 11. ~ 19.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21조¹⁾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각 호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생략)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예외사항 >

환자 가족	· 환자의 가족 등이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친족관계증명서만 첨부)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
급여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와 관련된 경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경우 ·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경우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 관련 요청의 경우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관련 요청의 경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경우
법원 등	·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의 압수(106조), 검사의 압수·수색·검증(215조) 등 ·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법원의 압수(146조), 군검사의 압수·수색·검증(254조) 등 ·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법원이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보험 및 사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의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료기록을 보내는 경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의 조사를 하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 등	· 「병역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에 관련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심사와 관련된 경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등에 관한 경우

□ 이와 같은 의료법의 입법체계는 2009. 1. 30. 「법률 제9386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종전에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에도 열람 등이 가능했던 규정을 현행과 같이 열거식으로 개정한 것으로, 의료법의 규율 하에서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자 한 것임.²⁾

2) 법제처는 “다른 법령에 진료기록 등의 요청 근거가 있더라도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의료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거나 입법목적과 규율내용이 달라 서로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2015.7.28. 법제처 법령해석 15-0373 참조).

□ 개정안이 예외사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병역법」 제77조의2³⁾에 따른 ‘확인신체검사’는 신체등급 판정에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되어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이 있을 때, 지방병무청장이 다시 검사하는 것임.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자로서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고, 병역판정검사에서 판정된 신체등급⁴⁾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게 됨.⁵⁾ 또한 병역판정

- 3) 「병역법」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되어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2.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병역법」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기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 ②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지방병무청과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 5) 「병역법」 제14조(병역처분)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한다.
1.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기로역
 2.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 전시기로역
 3.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 병역면제
 4.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도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기로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시기로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

검사를 통해 병역처분을 받은 이후라도,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음.⁶⁾

<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 현행 「병역법」 제77조의2⁷⁾에 따르면 이처럼 병역처분을 받았거나 변경 또는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병역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함.

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병역자원(兵役資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入營計劃)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6)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④ 예비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5조의2(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① 대체역으로서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거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을 면제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7) 「병역법」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되어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2.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런데 현행법에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관계 기관에 대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는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⁸⁾

현재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등에게 진료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023호)」이 국방위원회에 계류중이고, 개정안은 이의 의결을 전제로 발의된 것으로, 해당 법률안의 심사경과를 살펴 개정 논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신체검사를 위해 파견된 군의관 등이 실시하는데, 「병역법」 제11조의29)에서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은 현행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제10호로 포함되어 있음.

「병역법」 제77조의2의 확인신체검사도 병역처분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병역판정검사와 마찬가지로 진료기록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023호)」이 의결될 경우 그 취지를 반영하여 「의료법」 제21조제3항의 예외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8) [22070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9) 「병역법」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다만, 환자의 진료 관련 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현행 「의료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의견(찬성)

- 병역면탈 추적관리를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함.
- 현행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0호 및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 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2항에 따르면 확인신체검사를 하는 경우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 체계 하에서 지방병무청장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도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기록에 준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대상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2) 대한의사협회 의견(반대)

□ 의료법에서 환자진료기록의 제3자 열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건강 등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하면서 그 처리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데, 이에 대한 예외는 기본권 제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사익보다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 이외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없을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임.

-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진료기록을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3자 열람을 허용함으로써 얻는 행정적 편의라는 공익보다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환자의 권리 침해가 현저하므로 상기 개정안에 반대함.

3) 대한병원협회 의견(보완 필요)

□ 의료기관의 직접적인 손실을 방지하고, 공공기관 등의 요청에 원활하게 진료기록의 사본을 제공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의 사본발급을 요청한 자에게 발급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의견(찬성)

□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확인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대상자와 관련된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한국환자단체연합회(찬성)

-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인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4